

의안번호	제146호
의결 연월일	2019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중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이상욱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9년 2월 26일

#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상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2월 26일  
발 의 자 : 이상욱, 박상돈, 박형용,  
심기보, 육미선, 최경천,  
이상식

## 1. 제안이유

-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·삼사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, 용어 및 문구의 정비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1조(목적)에 사용된 약어 표기를 삭제하고 제2조로 이동 (안 제1조)
- 나. ‘공판’을 ‘변론’으로 개정 (안 제2조)
  - ‘공판’은 형사사건에 사용되는 용어로 행정, 민사 소송에 사용되는 용어인 ‘변론’으로 개정
- 다. 용어 및 문구 정비
  - ‘당해’ → ‘해당’ (안 제3조)
  - ‘가름한다’ → ‘갈음한다’ (안 제4조)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다. 협의 : 법무혁신담당관
- 마.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” 를  
“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 중 “(“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“ 이하 같다)가 당사자로 된 소송”  
을 “(소속행정기관을 포함한다)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” 으로, “도지사가  
선임하는” 을 “선임되는” 으로, “감정인(이하 “증인 등” 이라 한다)에  
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” 를 “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” 로 한다.

제2조 중 “증인등” 을 “증인, 참고인, 감정인(이하 “증인 등” 이라 한다)  
다)” 으로, “공판” 을 “변론” 으로, “현장검증시” 를 “현장검증 시” 로,  
여비, 현지교통비, 식비, 숙박료” 를 “여비, 숙박료” 로 한다.

제3조 중 “증인등에” 를 “증인 등에” 로, “계류증인” 을 “계류 증인” 으  
로, “당해” 를 “해당” 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증인등의” 를 “증인 등의” 로, “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서” 를  
“해당 법원에 미리 납부함으로써” 로, “가름한다” 를 “갈음한다” 로 한다.

제5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 를 “시행에” 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u>충청북도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</u>	<u>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</u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지사(“<u>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</u>“ 이하 같다)가 당사자로 된 <u>소송</u>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<u>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, 참고인, 감정인</u>(이하 “<u>증인 등</u>“이라 한다)에 대한 <u>실비변상</u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(소속행정기관을 포함한다)</u>를 당사자로 하는 <u>소송사건</u>----- ----- <u>선임되는</u> ----- ----- <u>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</u>에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실비변상의 범위) <u>증인등</u>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<u>공판</u> 또는 <u>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</u> 출석하는 증인 등의 <u>여비, 현지교통비, 식비, 숙박료</u>로 한다.</p>	<p>제2조(실비변상의 범위) <u>증인, 참고인, 감정인</u>(이하 “<u>증인 등</u>“이라 한다)-- <u>변론</u> -----<u>현장검증 시</u>----- <u>여비, 숙박료</u>----- --.</p>
<p>제3조(실비변상액) <u>증인등</u>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 <u>계류중인</u> 법원에 <u>증인 등</u>으로 신청할 때 <u>당해</u>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실비변상액) <u>증인 등</u>에 ----- ----- <u>계류 중인</u>----- ----- <u>해당</u>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지급) <u>증인등의</u>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<u>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서</u>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<u>가름한다.</u></p>	<p>제4조(지급) <u>증인 등의</u> ----- ----- <u>해당 법원</u> <u>에 미리 납부함으로써</u> ----- ----- <u>가름한다.</u></p>
<p>제5조(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5조(규칙) ----- <u>시행에</u> ---- -----.</p>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공무원 여비 규정

제2조(여비의 종류) 여비는 운임·일비·숙박비·식비·이전비·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.

## □ 민사소송비용규칙

- 제3조의2(증인등의 국내여비·숙박료) ① 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.
- ② 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·선박운임·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,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.
- ③ 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
- ④ 증인등의 국내운임, 식비 또는 숙박료는 「법원공무원여비규칙」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“국내여비지급표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.

## □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

제2조(여비의 종류) 여비는 운임·일비·숙박비·식비·이전비·가족여비 및 준비금등으로 구분한다.

[별표 2]

### 국내 여비 지급표 (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 운임	일 비 (1일당)	숙박비 (1박당)	식 비 (1일당)
제1호	실비 (특실)	실비 (1등급)	실비	실비	20,000	실비	25,000
제2호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	실비	20,000	실비(상한액: 서울특별시 70,000, 광역시 60,000, 그 밖의 지역은 50,000)	20,000

##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제1호

### ○ 사 유

- 이 조례는 띄어쓰기,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,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### ○ 작성자

- 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 정호필